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3. 10. 11(금)

산 업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9. 25

나. 제안자 : 김정현 · 안병배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9. 26

라. 상정일자 : 2013. 10. 7(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산업위원회 김정현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구남희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영종지역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나 당초 계획된 제3연륙교 건설은 요원한 상황으로 비싼 통행료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임.
- 현재 공사 중인 출입국지원센터 부지는 공항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지역으로 공항경찰 특공대와 운북 하수종말처리장, 농축산물 검역소,

특수견 훈련소 등이 입지한 외곽 지역으로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며,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 난민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음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음.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는 출입국지원센터의 난민지원시설 개청을 반대하며, 합리적인 난민지원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수도권 신공항 촉진법에 근거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불법 전환하여 개청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예정부지 주변에는 농축산물 검역소, 공항경찰 특공대, 헬기장,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난민지원센터 개청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천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 자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법무부가 중구 운북동(영종도)에 3개 동 6,612㎡(2,000평)규모로 건립한 출입국지원센터를 출입국지원시설로서의 본래 목적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난민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 법무부는 2010년 1월 출입국관리법의 난민지원시설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난민지원센터를 동 지역에 설립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하였으나,
- 2011년 3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장송환 대기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음.
-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장송환 대기시설 등 출입국지원센터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승인목적은 확대하여 난민지원센터로 임의 전환 운영하려고 하는바,
- 난민지원센터는 주민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기는 민감한 시설로 우리 시와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었음.
- 따라서, 출입국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본래 실시계획 승인 목적대로 출입국 업무지원 기능만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안병배 위원
 - 난민지원센터가 공항시설인가 ?
 - 난민지원센터부지 영종도 선정이전에 파주와 서울이 선정되지 않았나 ?
 - 영종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였나 ?
 - 난민지원센터는 누가 이용하는가 ?
 - 2010년 주민과 협약한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해야 함

○ 김영분 위원

- 현재 난민입국자와 난민인정자의 규모는 ?
- 지역주민은 난민지원센터에 대해 불안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바, 사정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김정현 위원

-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시 목적에 “난민지원센터”란 말은 없었는데, 적법한 것인지 ?
- 외국인 인권단체에서도 해당지역이 난민지원센터로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지역주민에 난민지원센터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했나 ?

○ 이한구 위원

- 당초 난민지원센터에서 출입국지원센터로 언제 변경하였나 ?
- 난민지원센터는 난민의 인권이 필요한 곳이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무부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시의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답 변 >

○ 법무부 난민과장 송소영

- 공항시설임.
- 선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한 바 있음.
- 개청시기를 미루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가 이용함.
- 난민신청자 5,834명 중 340명이 인정받았음.
- 실시계획 승인시 외국인심사 및 출국자송환대기 시설로 승인 받았기

-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 문제를 제기하는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음.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2011년 3월에 변경하였음.
 - 난민지원센터 설치는 불법이 아님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허인환 · 이한구 · 윤재상 · 김영분 · 김정현 · 안병배 · 조영홍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특이사항

- 없음

붙임 1.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수정안 1부.

2.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1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수정안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결의안 제명 중 “불법적으로”를 “적법하지 않게”로 한다.

결의사항 첫 번째 하나 중 “불법”을 “적법하지 않게”로 한다.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2013년 7월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법무부는 영종·운북동에 소재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울지방항공청에 출입국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허가 조건에는 출입국관리소 기능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연수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실시 계획을 제출하였을 뿐 난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의하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출입국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난민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난민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지원센터 개청과 관련하여 인천시장과의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미뤄볼 때 음성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난민법」에 의한 난민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도시에도 불법 체류자들의 이탈,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

해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 난민의 폭동 등 폭력 행위로 인해 자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어 「난민법」을 수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려는 출입국지원센터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종 지역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나 당초 계획된 제3연륙교 건설은 요원한 상황이며, 비싼 통행료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계획된 기반 시설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 난민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음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난민의 인권과 지원을 위해서도 해당 지역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인 출입국지원센터 부지는 공항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지역으로 공항경찰 특공대와 운북 하수종말처리장, 농축산물 검역소, 특수견 훈련소 등이 입지한 외곽 지역으로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다.

난민지원을 위한 예산 측면에서도 현재 법무부가 편성한 1인당 지원

금액을 59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수용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1인당 166만원으로 3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난민들도 수용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는 출입국 지원센터의 난민지원시설 개청을 반대하며, 합리적인 난민지원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출한다.

하나,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에 근거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 지원센터로 적법하지 않게 전환하여 개청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예정부지 주변에는 농축산물 검역소, 공항경찰 특공대, 헬기장,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난민지원센터 개청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천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 자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라.

2013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보낼 곳 : 대한민국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광역시